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40
----------	-------

발의연월일 : 2025. 8. 19.

발의자 : 추경호 · 김상훈 · 이달희
권성동 · 김정재 · 서지영
김위상 · 권영진 · 박대출
안철수 · 김은혜 · 김미애
최은석 · 나경원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장의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 밀접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수도권 밖으로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농공단지·첨단의료복합단지·국가식
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특례를 두고 있음.

위 특례들은 수도권 과밀 억제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기업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및 제61조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2028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2028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 -----.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 밀접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 ② (생 략)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 밀접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수도권과 밀접한 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과 밀접한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u>2025</u> 년 <u>12월 31일</u> 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③) ----- ----- ----- ----- ----- ----- ----- ----- <u>2028</u> <u>년 12월 31일</u> ----- ----- ----- ----- ----- ----- ----- -----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
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
입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적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

2028년 12월 31일

2028년 12월 31일

2028년 12월 31일

2031년 12월 31일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호의 구분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② ~ ⑦ (생 략)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2025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1. 2028년 12월 31일

<p>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p> <p>1. · 2. (생 략) ② · ③ (생 략)</p> <p>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7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p> <p>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u>2025년 12월 31일까지</u> 입주한 기업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하는 보건 의료기술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p> <p>2.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u>2025년 12월 31일까지</u> 입주한 기업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하는 식품</p>	<p>----- ---.</p> <p>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 ----- ----- ----- ----- -----. 1. ----- ----- -----<u>2</u> <u>028년 12월 31일</u> ----- ----- ----- ----- ----- 2. ----- ----- <u>2028년 12월 31일</u> ----- -----</p>
---	--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 ⑨ (생략)	② ~ ⑨ (현행과 같음)